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일시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주최	국회의원 강선우 · 임호선, (사)탁틴내일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일시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주최 국회의원 강선우·임호선,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제 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일시 2022년 2월 22일 (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국회의원실 제 8 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인사말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좌장 이현숙 대표 ((사)탁틴내일)

발제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권현정 부소장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조윤희 변호사
(공동법률상담소 이채)

지정토론 토론 1 서재선 부소장 (서울해바라기센터 아동)
토론 2 김민정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토론 3 박선옥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토론 4 선미화 계장 (경찰청 성폭력수사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여가 제한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탁틴내일 홈페이지(<http://www.tacteen.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국회의원 강선우 · 임호선, (사)탁틴내일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주관

탁틴내일

청소년과 함께 끌리는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문의전화 02) 338-8043

목 차

:: 축 사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9p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11p

:: 발 제 문

발제1. 피해 신고 시 법정 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13p
- 권현정 부소장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발제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25p
- 조윤희 변호사 (공동법률상담소 이채)	

:: 토 론 문

토론1. 서재선 부소장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41p
토론2. 김민정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47p
토론3. 박선옥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55p
토론4. 선미화 계장 (경찰청 성폭력 수사과)	59p

축 사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토론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동 주최로 뜻을 함께 해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6년 서울 용산구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온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 의지를 다지는 뜻으로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강화, 비디오 진술 녹화 제도 도입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조사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 악질적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막고,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세밀하고,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장벽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어 신고를 결정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현장 전문가분들과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분들께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풍성한 의견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축 사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토론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2월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에 맞추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강선우 의원님,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지혜를 모아주신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님, 조윤희 변호사님, 서재선 부소장님, 경찰청 선미화 성폭력 수사계장님, 여성가족부 박선옥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장 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 증거를 채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사 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 등의 의사에 반해 피해아동 등의 부모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그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세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아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 여부 및 보호자 고지 시점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자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고를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친족이 가해자인 비율이 17.6%에 이르러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는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와 보호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와 보호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특성, 사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받는 제도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아동, 청소년이 모든 성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의원 임호선

발제 1

파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권현정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1.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권현정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문제 제기의 배경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에게 알리고 지지와 지원을 받아 권리구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음.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반응을 우려해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고 안내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여 신고와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신고는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일 뿐 아니라 범죄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신고 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경찰의 이야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님.

행정적 편의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수사관도 있으며, 특히 보호자 고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동, 청소년의 사건을 접수하면 법적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여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46p).

-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담당자의 재량으로 법정대리인 고지 및 동의 없이 신고, 증거채취가 이루어지기는 사례가 드물게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신변 및 법정대리인의 민원 발생 시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담당자들은 방어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임.

2020년까지는 피해 지원 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기는 했으나 특히 수도권에서는 보호자 통지 문제로 신고가 어려운 사례가 부각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2021년 1월 범죄수사규칙 개정 후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함.

□ 관련 사례(실제 사례에 근거해 각색함)

1. (A) 2020년, 18세, 유포 협박 피해

- 2020년, SNS 1:1 대화방으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소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정보 및 사진 등을 여러 SNS, 불법 포르노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여러 시간 협박함.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피해자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압박함. 자기소개 영상을 보내자 또 나체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함. 응하지 않자 연락 오지 않음.
- 보름 후. 같은 SNS로 모르는 사람이 이전에 협박했던 사람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하며 다시 협박 지속함. 협박받는 중에 성폭력상담소 상담원과 함께 신고하려 경찰서 방문함
- 여성 청소년계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하나, 보호자 통지는 필수라고 함. 긴 시간 신고가 지체되어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고 돌아감. 다음날 상담소의 요청으로 당시 범죄수사규칙 중 아래의 제211조(2021년 1월 8일 범죄 수사 규칙 개정되며 현재는 삭제됨)을 근거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장 재량으로 보호자 통보 없이 신고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협박받는 중에도 신고가 지체되었음.

2020년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등) ①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 2021년, 17세, 강간 피해

- 2021년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상담 전화가 접수됨. 증거채취와 신고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하니 경찰서에 신고하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신고하려 감.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수사관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모님에게 사건 관련해 통

지 한다'고 안내함. 피해자는 '부모님이 알게 되면 신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신고 진행하지 않고 상담소로 연락함. 상담원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일단 사건 관련 증거채취가 시급하니, 신고 접수하고 보호자 고지를 최대한 미루어 달라고 양해를 구함.

- 이후 상담원과 함께 해바라기센터 방문 동행함. 증거 채취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궁여지책으로 상담원이 법정보호자 대신 서명함.
- 다음날 변호사 동행 하에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하였으나 다시 경찰이 법정대리인 통지 의무에 대해 언급하여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술 연기됨.
- 2, 3주 후 경찰서에서 보호자 통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신고 포기함.

3. (C) 2021년, 17세, 강간피해

- 애인에게 강간 피해당함.
- 신고하려다가 보호자 통지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됨.
- 부에게 가정폭력 당한 사실이 있었고 어머니도 부에게 동조하는 편이라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 포기함.

□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2차 가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가 심리적 준비 없이 또 상담원의 개입, 중재 없이 이러한 보호자의 2차 가해에 노출되었을 때 아동·청소년은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되거나 심리적 피해 후유증이 심화 될 수 있음.

2차 가해 사례 (실제 사례에 근거해 각색함)

- ◆ 사례(A) 부모님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함. 이후 가해자 특정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가 잘했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고 발언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2차 가해를 함.
- ◆ 사례(B) 부모님이 피해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거다' 라는 발언을 하여 내담자에게 상처를 줌
- ◆ 사례(C) 강간 피해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혼자 신고함. 이후 부모님에게 말하니 부가 피해자에게 신체 폭력을 함. 이후 가출함

- 상담원과 법률대리인도 보호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실제 지원 과정 중에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알려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음.
- 신고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포기하게 되면 피해자는 필요 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나아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자신에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고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음.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다음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신고와 처벌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보호자 통지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면 이는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신고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헌법상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고 시 보호자 통지 관련 규칙 검토

-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아래 표 참조)’ 제11조 ④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고소인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 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 시 보호자 통지에 대해 1.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4.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범죄수사규칙(아래 표 참조)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청 훈령으로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행정안전부령보다 하위에 있음. 상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함. (조윤희 변호사의 발제문 2 참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 신고 시 보호자 통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결국 경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이 잘못되면 수사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명감을 지니지 않은 한, 규정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48p).

〈표 1〉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규칙 비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0. 9. 10.] [경찰청훈령 제980호, 2020. 9. 10., 일부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1. 8.] [경찰청훈령 제1001호, 2021. 1. 8., 타법개정] - 현행규칙과 동일	(행정안전부)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20. 12. 31., 제정]
<p>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소년법’에 따른 “비행 소년”을 포함한다)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혈족이나 가</p>	<p>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p>

<p>즉 등(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는 때,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p>	<p>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p> <p>③ (생략)</p> <p>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표 2〉 신고 및 수사 시 보호자 통지 현황(경찰서) - 2021년 10월 본 상담소 전화 조사 결과로 공식적인 조사는 아님

지역	N	보호자 통지 필수	상담소, 변호사 동행	기타 의견
17개 시·도 경찰서 *48기관 조사	8	38	8	<p>보호자 통지 원칙</p> <p>예외) 변호사 동행 시 수사 진행하기도 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하지 않음 본인 의사가 명확할 경우, 상담원 동행 수사 가능 112신고부터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강조해야 가능 사안에 따라 검토 가능하나 13세 미만은 무조건 고지</p>

- 원칙적으로 보호자 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하지만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양육자와의 관계, 가정상황, 관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함. 위와 같은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로 상담원, 변호사, 수사관 등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해바라기센터의 증거채취는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증거로서의 효력을 위해 담당 형사 및 수사관과 논의가 필요함. 보호자 동의 문제에 대해 위탁기관인 병원 방침을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임. 원칙상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증거채취가 불가함.
- 예외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비장애이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응급키트 증거채취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센터도 소수 있음. 하지만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 통지가 있을 수 있고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 외 다른 보호자(상담원, 경찰, 의사 등)가 비공식적으로 책임져야 함.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올 경우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됨.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부모 고지 없이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의료 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병원 지침이나 경찰서의 업무 처리 관행 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합의된 지침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39p).

〈표 3〉 증거채취 시 보호자 동의 여부(해바라기 센터)

지역	N	보호자 동의 필수	기타 의견
전국 해바라기 센터	39	24	의료진료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야 함 원칙 상 보호자 동의 없이 증거채취 불가함 예외) 17세 이상인 경우, 비장애 의사결정 가능 여부 기준 후 판단 증거채취는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나, 이후 보호자 통지 필요 13세 미만은 무조건 동의 필요

□ 해외 입법 사례

- 영미권 국가는 18세 미만이지만 충분히 성숙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청소년(sufficiently mature and capable of making their own decision)을 'Mature Minor'로 구분하여 의료행위와 형사절차에서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호주 주 정부의 경우 성착취가 존재했다는 합리적인 확신(reasonable belief)을 가지게 된 전문가는 절차 진행 방식과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하여 Mature Minor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¹⁾
 - 아동이 'Mature Minor'라는 평가는 아동의 나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 정서적 성숙도, 지적 능력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보건 종사자는 사례별, 건강 사건별로 각 아동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²⁾
- 오스트리아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 법률적 조력인 제도를 두고 있음.
 - ‘심리사회적 조력’이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절차에 따르는 당혹감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문에 따른 정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하고, ‘법률적 조력’이란 변호인을 통한 법률적 조언과 절차의 대리를 말한다.
 -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보호시설 등 관련 공인시설과 계약하여 절차 조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조력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과 상담, 적절한 사회복지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춤.³⁾

□ 제언

-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 통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 개정이 시급함
 -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은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를 명시하여 권리 구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함.
- 해바라기센터의 증거채취 과정에서도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를 명시하여 증거채취 시기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이 보완 검토. 또한 의료법 중 응급상황에서는 보호자 등의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 시 증거채취 또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법정대리인 등의 없이도 증거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하는

1)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Guidelines for the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sexual abuse when the child is a mature minor, <https://ww2.health.wa.gov.au/%7E/media/Files/Corporate/general%20documents/Child%20protection/PDF/InfoSheet07b-Guidelines-reporting-child-sexual-abuse-mature-minor.ashx>(최종방문 2021. 1. 26.).

2)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Infomation Sheet 7 – The mature miner, consensual sex and child sexual abuse

3) 황종근, 오스트리아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국외 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2011, pp. 68-69

방안 검토.

< 추가 제언 >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신고 시 가해행위 제재의 즉시성 및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처벌 받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신고 중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권리 보장을 위해 신고까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 신고 접수는 하되, 보호자 통지 연기 및 수사 개시에 대한 건은 논의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예방, 동일한 가해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 신고 접수 시 가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고 사실 확인, 타 사건에서의 활용 가능,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자료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법정대리인 고지와 동의에 관한 자문, 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1월
- 황종근, 오스트리아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2011
-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Guidelines for the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sexual abuse when the child is a mature minor,
<https://www.health.wa.gov.au/%7E/media/Corporate/general%20documents/Child%20protection/PDF/InfoSheet07b-Guidelines-reporting-child-sexual-abuse-mature-minor.ashx>

발제 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발제 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I. 쟁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하, ‘피해 아동·청소년’이라 하겠습니다)이 수사기관 신고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부모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화 등으로 고지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성폭력 신고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또는,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그 보호자에게 사건을 고지해야 하는 내부 지침의 존재¹⁾를 이유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가 있을 시 (가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한) 자체 없이 그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러한 일환으로 그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아동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가족에 의한 침묵과 은폐 강요, 부모에 의한 일방적 합의와 고소 취하, 가족의 비난과 책임 추궁, 가족과의 단절 등 2차 피해가 보고²⁾되고 있기도 하며,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피해 아동청소년

1) 2021년 탁틴내일 지원 사건의 담당 수사관 주장에 따른 것이나, 해당 내부 지침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음. 위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근거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됨.

년들이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 폭력 피해 사실을 그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에게 즉각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고소권 등 권리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II. 형사 절차 상 보장되어야 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1.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며³⁾,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 됩니다⁴⁾.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⁵⁾.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혹은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각 형사 절차의 과정은 위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채현숙,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8, No. 1, 2016. 2, pp. 117-140

3) 현재 1991. 4. 1. 89헌마160 등 참조

4) 현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참조

5) 현재 1997. 3. 27. 95헌가14등 참조

2. 고소권 및 형사상 합의를 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공법상의 권리”라고 판시 하였습니다⁶⁾.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⁷⁾. 즉,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나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⁸⁾와 더불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법정대리인도 피해자와 별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⁹⁾는 모두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능력 있음을 바탕으로 합의에 관한 능력 역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6)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참조

8)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91, 2011전노54(병합) 판결 참조

9)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3. 성폭력처벌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1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79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상 아동의 권리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하 ‘OPSC’)를 비준하였고, 위 협약 등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CRC 제3조 제1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며, OPSC 제8조 제3항은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 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CRC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

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OPSC 제8조 제1항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면서 ‘피해아동의 견해·요구 및 관심사가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CRC 제16조 제1항은 아동은 그 누구라도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PSC 제8조 제1항은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I.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법정대리인 고지의 문제점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또는,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그 보호자에게 사건을 고지해야 하는 내부 지침(이하, ‘이 사건 규정들’)의 존재를 근거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가 있을 시 지체없이 그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내지 내부 지침은 경찰청 내부의 업무처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것이 상위 법규인 형사소송법, 경찰수사규칙 등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대외적 구속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규정은 위법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규정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1. 이 사건 규정들의 상위 법령 위배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58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사가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 또는 부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고소인(피해자가 고소인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소인,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항고 등의 권리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판 진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형사 재판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취지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제정된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를 함에 있어 고소인의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통지하는 것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사건 수사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것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일방적으로 통지를 행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수인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 규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및 제2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및 제25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79조, 인권보호수사규칙제 51조 및 제56조에서는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수사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깨는 것이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가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아닌 신뢰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¹⁰⁾

이제까지 살핀 바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또는 2차 피해 등 발생에 관련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수사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들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들이 피해자의 의사와 복리에 반하는 경우까지도 법정대리인 등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들이 헌법,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규정들의 기본권 등 침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들이 헌법, 형사소송법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바 없다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만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나¹¹⁾,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들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등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가 불가능해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 된다면,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로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10) 구 범죄수사규칙[시행 2020. 9. 10.][경찰청훈령 제980호, 2020. 9. 10., 일부개정] 제204조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함께 있어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고, 동법 제211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 등을 할 때에는 자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야 하나,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보호자 통지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1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판결 등 참조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들로 인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 억제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에 역행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사실상의 의사능력(고소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의 고소권 및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인 것이며, 나아가 CRC, OPSC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고려,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아동의 견해 고려, 피해 아동의 사생활 등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서 이 사건 규정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IV.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1.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권리 구제 방안

가. 헌법소원심판

만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규정들에 근거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알림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침 또는 행위가 헌법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만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규정들에 근거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알림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침 또는 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그러한 제도,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44조, 제48조).

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만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규정들에 근거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알림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7조).

2.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의 개정

이 사건 규정들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규정들이 위헌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를 억제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구제에 사실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피해 구제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정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복리를 반영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 또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절차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 또는 피해 지원 기관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¹²⁾에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되,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하도록 하는 안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3조의 내용을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안으

12) 기존 의제강간연령이 만13세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촉법소년은 만1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만 14세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령 기준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로서, 성폭력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거나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의 피해 아동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사실상의 의사능력 및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나이의 피해 청소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의 동의 여부 및 복리를 고려하여 피해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피해 사실(수사 진행상황)의 통지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며,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뢰관계인,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안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3조의 내용을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사 절차에 있어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이 형사 절차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고 권리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그 피해 사실의 통지를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뢰관계인 또는 전문성 있는 법정 기관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전문 조력인', 이하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에 하도록 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조력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사 절차상 조력을 위한 제도 마련

피해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사 절차의 진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조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조력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사 절차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 조력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가. 현행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현행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상의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등), 13세 미만 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 등),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게 하는 제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내와 편의, 조언을 제공하는 증인지원관 제도(성폭력처벌법 제32조) 등이 있습니다.

한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법무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식 ‘바르나후스(Barnahus)’ 모델(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 형사사건 조사, 보호, 치료를 위한 절차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것)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¹³⁾

나. 외국의 입법례

1) 오스트리아 “심리사회적 조력” 제도¹⁴⁾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은 고의범죄로 인하여 폭력 또는 위험한 협박을 받았거나 성적 불가침성이 훼손된 자, 범죄로 인해 사망한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 범죄행위의 목격자인 기타 다른 친족에게는 범죄로 인한 개인적인 당혹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회심리적 또는 법률적인 절차상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사 절차상 ‘사회심리적 조력’이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절차에 따르는 당혹감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문에 따르는 정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조력’이란 변호인을 통한 법률적 조언과 절차의 대리를 의미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인된 피해자보호시설 등과 계약하여 절차 조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늦어도 최초 조사 전에 절차 조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고소 시점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위와 같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영국 “Victim Support”, “증개자” 제도¹⁵⁾

영국의 피해자 지원은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의 공조로 이루어지며, 전국 형사법원 내에 ‘Victim Support(VS)’[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을 설치하여 사건 발생부터 재판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S는 증인의 범죄 후유증 대처 등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체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증인 서비스의 운영, 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하며, 특히 취약하거나 위협받는 증인(18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특정한 고통에 시달릴 개연성이 있는 증인)에게는 ‘증개자’라 불리는 전문가가 조사를 지원하는데, 증개자는 조사와 증언 보조

13) KBS, “[단독]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일월화’ 추진…상반기 종 입법”, 2022. 1. 26.

14) 황종근, “오스트리아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 26집, 2011, pp. 68-69

15)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69호, 2013. 6., pp. 65-73

의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전문 조력인’ 제도 마련

우리나라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 과정을 아울러서 심리·사회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진술조력인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만 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증인지원관 제도는 각 동석 또는 증인 안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고려, 반영하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 조력인’을 직접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 선임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 및 사건 진행 상황을 ‘전문 조력인’에 통지하여, 전문 조력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울러 심리·사회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토론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서재선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토론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서재선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및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제12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가진다는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모든 권리의 주체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그뿐만 아니라 앞서 발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국내법, 법원 판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현장에서는 이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자는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 ▣ 해당 토론자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아동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검토하고 발표자의 논의를 보완하려 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구제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억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보호

- ▣ 우선은 수사와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의 통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법정대리인의 통지 이행은 아동 청소년이기에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행정 처리의 편의보다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의미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란 수사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가해자의 요구 및 협박, 신변 위협, 2차 피해 등 대처하기에 까다로운 문제 상황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성폭력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후유증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 주변인들의 반응과 개입에 따라 회복이 촉진되기도 하는 반면,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변인의 반응과 개입, 특히 법정대리인 중 보호자의 지지와 관심이 성폭력 피해 회복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 법적대리인의 역할이 부재한 경우라면 관할 구청의 도움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존재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의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 현장 업무 종사자들은 의료 및 심리지원 시 최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의 해당 종사자와 협력하여 아동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지원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책임, 그리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감수한 채 지원 종사자의 사명감에 기대어 피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 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예외 사항을 두어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 거부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권리구제 방안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헌법소원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은 시급성을 다투고 많은 갈등과 걱정을 가지고 고소를 결정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해결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능력 및 고소능력이 인정 될 수 있는 나이의 차등을 두고,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뢰관계인 상담 시설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안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제자가 제시한 오스트리아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사회적·법률적 조력자’ 지정, 법무부 장관이 공인시설과 계약으로 마련된 절차와 같이 공식적인 체계 안에서 근거를 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제자가 제시한 상담원, 변호사, 수사관

등 법정대리인을 대신 할 수 있는 역할 군의 명시뿐만 아니라 그 역할 범위, 조력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고려해야 할 보호적 요인들이 많기에 이를 한 담당자 역할로 한정 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기존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국선변호인,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체계와 역할 분담을 하여 아동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외상황에 대한 구체화

- ▣ 조력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성폭력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득 하여도, 아동 청소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는 신고뿐만 아니라 진술, 검찰 조사, 재판 등 형사소송 전 과정 속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진술녹화 현재의 위험 결정에 따라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다시 진술하고,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의 가해자 역고소 위험성도 존재하며, 피해 아동 청소년의 자해, 타해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해 고려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력자의 역할 위임 내용 안에는 법정대리인 고지가 즉각 필요한 예외상황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추가가 요구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예방책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고지를 원치 않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을 자세히 탐색해야 합니다. 가정 내에 폭력, 아동학대 가능성, 부모 자녀 관계문제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정서적 학대를 경험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성폭력 피해가 보호자에게 알려졌을 때 보호자는 피해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를 일탈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원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정서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점검과 함께 성폭력 피해 회복 전반에 대한 긴밀한 탐색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 신고와 증거채취는 동시 선상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독자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증거물 제출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¹⁾

1) 2019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여성가족부)

- ▣ 의료지원과 관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은 응급증상에 따르는 증상입니다.²⁾ 다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피해자인데, 법률상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료지원을 진행 할 수 있다³⁾는 내용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매뉴얼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결론적으로 해바라기센터는 매뉴얼과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자에게 동의를 원치 않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도 가급적 보호자에게 고지 할 것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될 경우 동행한 경찰, 상담사 등 기관의 종사자에게 고지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채취를 이행합니다.
-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지원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안전 우려에 대한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 등을 온전히 지원하는 담당자 뜻입니다. 의료지원 매뉴얼이 존재하고, 매뉴얼대로 실행하고 있지만, 경찰, 의사, 해바라기센터 종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감소시키거나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할 만한 대응 법안 및 체계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증거채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료법, 수탁병원의 규정, 성폭력,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한 법과 규정의 정비 혹은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여가부, 경찰청, 복지부 등이 합의한 증거채취 관련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의 토론이 모여 그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4) 2019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여성가족부)

토론 2

피해신고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김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토론 2.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김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변호사)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인 2월 22일을 맞이하여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정대리인 통지 문제는 실무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경험하여 본 주제이기도 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발제문에 덧붙여 저의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I.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의미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법정대리인이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고, ②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대리인 대신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제13조 제1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임.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서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무는 범죄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무능력자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특히 형사소송법 제225 제1항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함으로써 이러한 고소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음¹⁾. 참고로 민법 제913조에서도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ii.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의 실무상 문제점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되면서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담당 수사관은 향후 피해자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자 부모가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법정대리인등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지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결과 가족에게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권현정 부소장님 발제문 참조).

성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밝히기를 꺼려 죄명이 기재된 증인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도 자신의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는 경우가 흔함. 반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획일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수사 진행상황이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iii.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리적 문제점

민법 제5조 이하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의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고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판결).

1)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독립적인 고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고소권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고유권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이러한 미성년 피해자의 고소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고소권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분리하여 보장하는 형사소송 법상 취지에 반하고 그 결과 헌법상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①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③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④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이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경우에는 법규적 성격이 인정됨. 범죄수사규칙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면 법령의 위임 한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 내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규정하였는지,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의문임.

iv.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역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와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등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원관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

고 있음²⁾.

그런 점에서 볼 때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무조건적 통지는 성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점점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v.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의 개선 방안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①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 외의 자에게의 통지의무를 유지하되, 미성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대리인 대신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신뢰관계인에는 상담기관, 변호인, 수사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②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4항과 같은 예외규정(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을 두거나, ③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④피해자의 명예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복리 등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II.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증거채취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가해자 처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응급키트 등 증거채취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증거채취 절차에 대한 전국의 병원 및 경찰의 내부 지침 등을 통일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성이 있고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면책 방안을 강구해야 함.

III.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사절차상 조력을 위한 제도

법정대리인이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권한을 배제 또는 축소 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사절차상 조력을 위한 '전문 조력인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적극 공감(조윤희 변호사님 발제문 참조). 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³⁾를 활용하는 방안이 존재함을 첨언하고자 함.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4항상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신고와 처벌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권현정 부소장님 발제문 참조), 법률적인 조력에 대하여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사회 심리적 조력을 담당하는 상담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에게 시의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상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짐.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정된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불기소처분 확정시 또는 재판 확정시까지 선정의 효력이 미침.

토론 3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메모장 (MEMO)

메모장 (MEMO)

토론 4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토론문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과 계장]



토론 4.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토론회

선미화 (경찰청 성범죄수사과 계장)

이번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강선우 국회의원님,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님,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오늘 발제해 주신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님, 조윤희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그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발제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 시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하여, △피해자 권리 안내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안전조치 △국선변호사 선임 △영상삭제 지원 △전문기관 연계와 같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21년 전 수사 과정에 걸쳐 총 1,037 건의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였습니다.

구분 합계	영상삭제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연계	피해자 안전조치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신뢰관계자 등 동석	진술녹화	가명조서 작성
1,037건	228건	114건	41건	157건	160건	84건	253건

1) 먼저 영상삭제 관련, 경찰은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기반으로 기관별(여가부-방통위-방심위) 수집·공유하는 피해 영상 특징값 정보(해시값·영상DNA)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동대응 DB를 구축해 삭제·차단 등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업무협약 체결('19. 11. 12.)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해바라기센터에 161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당 차병원 등 7개 센터에는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진술을 유도하고 기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수사관들에게 3단계로 구분되는 ‘아동·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NICHD)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4) 피해 진술의 타당성·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3세 미만 피해자 조사에 민간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석시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작성케 하는 진술 분석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 12월부터 경찰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계'를 신설·운영 중인 만큼, 경찰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종합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발제문 상 제언 관련 의견

금일 발제자들께서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신고 시 수사기관의 법정대리인 통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채취 과정 중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가.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에 대하여

일단,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의 통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경찰관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 수사관들은 대부분 직계친족인 부모에게 통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 또한 보호자에 대한 통지 규정으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통지 규정 중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2항 규정의 확대 적용 등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11헌마659 등) △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생략으로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가 늦어질 수 있는 점 △ 보호자의 친권·양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 △ 행위능력 결여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는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범죄수사규칙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이 ①헌법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에 배치된다는 해석이 있는 점, ②상위법령인 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등이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상위 규칙인 경찰수사규칙 또한 다양한 통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 조항 이외에도 △ 친권 남용이 예상되는 사정 △ 미성년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우려 △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함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적합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통지를 생략하는 등 폭넓은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권현정 부소장님의 발제 내용처럼 신고 접수는 받아주고 그 이후에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윤희 변호사님의 발제 내용처럼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의사·고소 능력을 인정하여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재량화하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이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보호시설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의 도입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외의 협의와 입법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통지에 대하여

권현정 부소장님께서는 전국 39개소 해바라기센터 중 24개의 센터가 증거채취 시에 보호자 동의를 필수로 하여, 아동·청소년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부소장님의 발제문에 제시된 <표 3>과 같이 많은 해바라기센터가 아동·청소년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거채취 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시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고, 이는 의료행위로서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각 병원에 계신 의료진이 법률과 각 의료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 의료의 설명·동의)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리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③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동의를 거부할 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채취가 지연되거나 결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담원 또는 담당 형사가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잦으나, 이는 책임 소재로 소극적인 대응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응급상황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 시 증거채취 상황까지 확대하거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보다 넓은 범위로 보호자를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의료기관의 지침 수정이 필요합니다.

③ 결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사를 해왔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금일 발제의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피해 신고·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의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해바라기센터 내 증거채취 방

법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의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동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정대리인 부재 시 전문 조력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주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주최	국회의원 강선우 · 임호선, (사)탁틴내일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